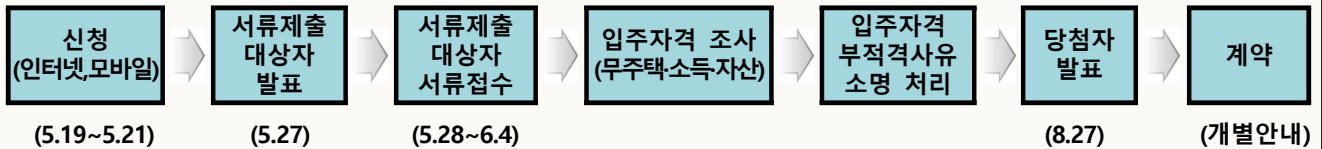


화성동탄2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05.08)

- 입주자 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중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금회 모집 공고는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동시 모집 공고**입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C26블록만** 해당되오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 아래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화성동탄2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5.08)**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 학 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 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5.05.09~2006.05.08**)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완화조건]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60.05.08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⑥ 산업단지근로자 (화성동탄2 C26블록만 해당)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 지역(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 지역(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	입주자격 완화 내용		
1순위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대상		일반조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1인	120% 이하
		2인	110% 이하
		3인 이상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 기간요건		
	공급대상		일반조건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연령	만 6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만 6세 이하	
2순위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대상		완화조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1인	140% 이하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2인	140% 이하
		3인 이상	130% 이하
	■ 기간요건		
	공급대상		완화조건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자녀의 연령	9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9세 이하
3순위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계층		완화조건
	전체		150% 이하
	■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일반공급 순위

단지	C26블록			A82블록, A77-1블록, A4-1블록 지원6-2블록, A53블록, A54블록		
순위 계층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산업단지 근로자	신청 가능		신청 불가	신청 불가		
대학생	신청 불가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청년·신혼부부·한부모	신청 불가		신청 가능	신청 가능		
고령자	31A-1, 44A-1 : 신청 가능(추첨)			[고령자계층 공급형별] 신청 가능(추첨)		
	31A, 44A : 신청 불가		31A, 44A : 신청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불가			신청 가능(추첨)		

* 계층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잔여예비자 소진 후,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함으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는 장기간(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부적격)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주거약자에 한하여 현장에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건설위치

단지명	주소	입주개시
C26블록(26단지 산업단지형)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277번길 12(오산동 1017)	'17. 02월
A82블록(28단지 일반형)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길 13(장지동 913)	'19. 05월
A77-1블록(35단지 일반형)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 42(산척동 747)	'20. 07월
A4-1블록(2단지 일반형)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08-21(영천동)	'20. 08월
지원 6-2블록(1단지 일반형)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영천동 197)	'22. 09월
A53블록(38단지 일반형)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5길 90(신동 116)	'23. 04월
A54블록(38단지 일반형)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5가길 35(신동 111-1)	'23. 11월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단지	공급형별	공급대상	모집자수	건설 호수	기존 예비자수	세대당 계약면적(m²)				합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404	2,833	124					
화성동탄2 C26블록	31A	산단근로자(1,2순위) 대학생(3순위) 청년(3순위) 고령자(3순위)	33	168	4	31.97	19.4928	2.9096	15.0899	69.4623
	31A-1 (주거약자)	고령자(추첨)	10	48	3	31.96	19.2977	2.9086	15.0852	69.2515
	44A/B	산단근로자(1,2순위) 신혼부부·한부모가족(3순위)	20	45	0	44.92	26.5639	4.0881	21.2023	96.7743
	44A-1 (주거약자)	고령자(추첨)	3	5	0	44.95	26.3791	4.0909	21.2165	96.6365
화성동탄2 A82블록	26A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10	135	12	26.26	13.6056	2.4983	13.5579	55.9218
	26AS (주거약자)	고령자	20	27	0	26.26	13.6056	2.4983	13.5579	55.9218
	36A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30	298	5	36.43	18.8748	3.4658	18.8086	77.5792
	42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	40	0	42.42	21.9783	4.0358	21.9012	90.3353
화성동탄2 A77-1블록	26A/B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5	162	26	26.03	12.4906	2.1992	11.9602	52.6800
	36A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50	384	13	36.04	17.2940	3.0450	16.5596	72.9386
화성동탄2 A4-1블록	26A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50	430	9	26.64	16.1498	3.0606	15.6119	61.4623
	35A-S~D-S	청년	3	5	0	35.43	21.4785	4.0705	20.7632	81.7422
	36A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	120	9	36.39	22.0604	4.1808	21.3257	83.9569
	36A-1 (주거약자)	고령자	5	54	1	36.39	22.0604	4.1808	21.3257	83.9569
	36B/C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	24	1	36.36	22.0423	4.1773	21.3082	83.8878
	44A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5	108	7	44.41	26.9224	5.1021	26.0257	102.4602
	44A-1 (주거약자)	고령자	2	20	2	44.41	26.9224	5.1021	26.0257	102.4602
	44B/C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15	138	3	44.43	26.9345	5.1045	26.0375	102.5065
화성동탄2 지원 6-2블록	20A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30	172	6	20.94	11.6298	6.8915	21.0409	60.5022
	28A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5	84	16	28.92	16.0618	9.5178	29.0594	83.5590
화성동탄2 A53블록	36A/A-1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8	36	0	36.86	19.7298	6.4056	25.7039	88.6993
	36B/B-1/ B-2/B-3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40	178	0	36.80	19.6977	6.3951	25.6620	88.5548
	44A/A-1/ A-2/A-3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5	120	4	44.75	23.9530	7.7767	31.2059	107.6856
화성동탄2 A54블록	44Aa/44A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	32	3	44.07	26.4503	5.2715	18.6326	94.4244

* 구조 및 난방의 경우, A54블록 외 6개 단지는 철근 콘크리트(벽식)·지역난방이며, A54블록은 철근 콘크리트(라멘)·지역난방입니다.

단지	공급형별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5%)	잔금 (95%)					
화성동탄2 C26블록	31A	산단근로자	40,400	2,020	38,380	168,330	+	17,000	57,400	69,160
						-	33,000	7,400	264,580	
		대학생, 청년(소득無)	34,340	1,717	32,623	143,080	+	14,000	48,340	61,410
						-	28,000	6,340	224,740	
		청년(소득有)	36,360	1,818	34,542	151,500	+	15,000	51,360	64,000
						-	30,000	6,360	239,000	
		고령자	38,380	1,919	36,461	159,910	+	16,000	54,380	66,570
						-	32,000	6,380	253,240	
	31A-1 (주거약자)	고령자	38,380	1,919	36,461	159,910	+	16,000	54,380	66,570
					-	32,000	6,380	253,240		
	44A/B	산단근로자	58,400	2,920	55,480	243,330	+	25,000	83,400	97,490
						-	49,000	9,400	386,24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8,400	2,920	55,480	243,330	+	25,000	83,400	97,490	
					-	49,000	9,400	386,240		
44A-1 (주거약자)	고령자	55,480	2,774	52,706	231,160	+	23,000	78,480	96,990	
				-	46,000	9,480	365,320			
화성동탄2 A82블록	26A	청년(소득無)	30,260	1,513	28,747	126,080	+	11,000	41,260	61,910
						-	25,000	5,260	198,990	
		청년(소득有)	32,040	1,602	30,438	133,500	+	12,000	44,040	63,500
						-	26,000	6,040	209,330	
		주거급여수급자	26,700	1,335	25,365	111,250	+	8,000	34,700	64,580
						-	22,000	4,700	175,410	
	26AS (주거약자)	고령자	33,820	1,691	32,129	140,910	+	13,000	46,820	65,070
					-	28,000	5,820	222,570		
	36A	청년(소득無)	43,520	2,176	41,344	181,330	+	18,000	61,520	76,330
						-	36,000	7,520	286,330	
		청년(소득有)	46,080	2,304	43,776	192,000	+	19,000	65,080	81,160
						-	38,000	8,080	302,83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1,200	2,560	48,640	213,330	+	21,000	72,200	90,830
						-	43,000	8,200	338,740	
고령자					+	20,000	68,640	85,990		
					-	40,000	8,640	319,320		
42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0,000	3,000	57,000	250,000	+	25,000	85,000	104,160	
					-	50,000	10,000	395,830		
화성동탄2 A77-1블록	26A/B	청년(소득無)	32,640	1,632	31,008	136,000	+	13,000	45,640	60,160
						-	27,000	5,640	214,750	
		청년(소득有)	34,560	1,728	32,832	144,000	+	14,000	48,560	62,330
						-	29,000	5,560	228,580	
	36A	주거급여수급자	28,800	1,440	27,360	120,000	+	10,000	38,800	61,660
						-	24,000	4,800	190,000	
		청년(소득無)	46,580	2,329	44,251	194,080	+	19,000	65,580	83,240
						-	39,000	7,580	307,830	
		청년(소득有)	49,320	2,466	46,854	205,500	+	21,000	70,320	83,000
						-	41,000	8,320	325,08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4,800	2,740	52,060	228,330	+	23,000	77,800	94,160
						-	46,000	8,800	362,490	
고령자					+	22,000	74,060	88,570		
					-	43,000	9,060	342,320		

단지	공급형별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5%)	잔금 (95%)					
화성동탄2 A4-1블록	26A	청년(소득無)	37,400	1,870	35,530	155,830	+	16,000	53,400	62,490
						-	31,000	6,400	246,240	
		청년(소득有)	39,600	1,980	37,620	165,000	+	16,000	55,600	71,660
						-	33,000	6,600	261,250	
		주거급여수급자	33,000	1,650	31,350	137,500	+	13,000	46,000	61,660
						-	27,000	6,000	216,250	
	35A-S~ D-S	청년(소득無)	49,300	2,465	46,835	205,410	+	21,000	70,300	82,910
						-	41,000	8,300	324,990	
		청년(소득有)	52,200	2,610	49,590	217,500	+	22,000	74,200	89,160
						-	43,000	9,200	342,910	
	36A	청년(소득無)	51,680	2,584	49,096	215,330	+	22,000	73,680	86,990
						-	43,000	8,680	340,740	
		청년(소득有)	54,720	2,736	51,984	228,000	+	23,000	77,720	93,830
						-	46,000	8,720	362,16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0,800	3,040	57,760	253,330	+	26,000	86,800	101,660
						-	51,000	9,800	402,080	
	36A-1 (주거약자)	고령자	57,760	2,888	54,872	240,660	+	24,000	81,760	100,660
						-	48,000	9,760	380,660	
	36B/C	청년(소득無)	51,680	2,584	49,096	215,330	+	22,000	73,680	86,990
						-	43,000	8,680	340,740	
		청년(소득有)	54,720	2,736	51,984	228,000	+	23,000	77,720	93,830
						-	46,000	8,720	362,16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0,800	3,040	57,760	253,330	+	26,000	86,800	101,660
						-	51,000	9,800	402,080	
	44A	청년(소득無)	64,940	3,247	61,693	270,580	+	27,000	91,940	113,080
						-	54,000	10,940	428,080	
		청년(소득有)	68,760	3,438	65,322	286,500	+	29,000	97,760	117,330
						-	57,000	11,760	452,75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6,400	3,820	72,580	318,330	+	32,000	108,400	131,660
						-	64,000	12,400	504,990	
	44A-1 (주거약자)	고령자	72,580	3,629	68,951	302,410	+	31,000	103,580	121,570
						-	61,000	11,580	480,320	
	44B/C	청년(소득無)	64,940	3,247	61,693	270,580	+	27,000	91,940	113,080
						-	54,000	10,940	428,080	
		청년(소득有)	68,760	3,438	65,322	286,500	+	29,000	97,760	117,330
						-	57,000	11,760	452,75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6,400	3,820	72,580	318,330	+	32,000	108,400	131,660
						-	64,000	12,400	504,990	
고령자		72,580	3,629	68,951	302,410	+	31,000	103,580	121,570	
					-	61,000	11,580	480,320		
화성동탄2 지원 6-2블록	20A	대학생, 청년(소득無)	26,520	1,326	25,194	110,500	+	8,000	34,520	63,830
						-	22,000	4,520	174,660	
		청년(소득有)	28,080	1,404	26,676	117,000	+	9,000	37,080	64,500
						-	23,000	5,080	184,080	
		주거급여수급자	23,400	1,170	22,230	97,500	+	6,000	29,400	62,500
						-	19,000	4,400	152,910	
	28A	대학생, 청년(소득無)	38,420	1,921	36,499	160,080	+	16,000	54,420	66,740
						-	32,000	6,420	253,410	
		청년(소득有)	40,680	2,034	38,646	169,500	+	17,000	57,680	70,330
						-	34,000	6,680	268,660	
	주거급여수급자	33,900	1,695	32,205	141,250	+	13,000	46,900	65,410	
					-	28,000	5,900	222,910		

단지	공급형별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5%)	잔금 (95%)					
화성동탄2 A53블록	36A/A-1	청년(소득無)	44,200	2,210	41,990	184,160	+	18,000	62,200	79,160
							-	37,000	7,200	292,070
		청년(소득有)	46,800	2,340	44,460	195,000	+	20,000	66,800	78,330
							-	39,000	7,800	308,75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2,000	2,600	49,400	216,660	+	22,000	74,000	88,320
							-	43,000	9,000	342,070
		주거급여수급자	39,000	1,950	37,050	162,500	+	16,000	55,000	69,160
							-	32,000	7,000	255,830
		고령자	49,400	2,470	46,930	205,830	+	21,000	70,400	83,330
							-	41,000	8,400	325,410
	36B/B-1/ B-2/B-3	청년(소득無)	44,200	2,210	41,990	184,160	+	18,000	62,200	79,160
							-	37,000	7,200	292,070
		청년(소득有)	46,800	2,340	44,460	195,000	+	20,000	66,800	78,330
							-	39,000	7,800	308,75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2,000	2,600	49,400	216,660	+	22,000	74,000	88,320
							-	43,000	9,000	342,070
		주거급여수급자	39,000	1,950	37,050	162,500	+	16,000	55,000	69,160
							-	32,000	7,000	255,830
		고령자	49,400	2,470	46,930	205,830	+	21,000	70,400	83,330
							-	41,000	8,400	325,410
	44A/A-1/ A-2/A-3	청년(소득無)	54,400	2,720	51,680	226,660	+	23,000	77,400	92,490
							-	45,000	9,400	357,910
		청년(소득有)	57,600	2,880	54,720	240,000	+	24,000	81,600	100,000
							-	48,000	9,600	380,00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4,000	3,200	60,800	266,660	+	27,000	91,000	109,160
							-	53,000	11,000	421,240
		주거급여수급자	48,000	2,400	45,600	200,000	+	20,000	68,000	83,330
							-	40,000	8,000	316,660
		고령자	60,800	3,040	57,760	253,330	+	26,000	86,800	101,660
							-	51,000	9,800	402,080
화성동탄2 A54블록	44Aa/ 44A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3,600	3,180	60,420	265,000	+	27,000	90,600	107,500
							-	53,000	10,600	419,580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공통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잔여예비자 소진 후, 계약 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함으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는 장기간(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주거약자형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나, **현 상태로 계약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기설치된 편의 시설물의 철거 및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C26블록

- 화성동탄2 C26블록은 **행복주택 608세대, 오피스텔 140세대 혼합단지**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31A형의 “산단근로자”, “대학생”, “청년”, “고령자”** 공급물량, **44A/B형의 “산단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공급물량은 각 공급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A82블록

- **26A형의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공급물량, **36A형의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의 공급물량은 각 공급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A77-1블록

- **26A형의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공급물량, **36A형의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A4-1블록

- **26A형의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공급물량, **36A형, 36B/C형, 44A형의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공급물량, **44B/C형의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지원 6-2블록

- **20A형** 주택에는 전기쿡탑(2구형), 소형 냉장고, 냉장고장, 책상, 책장의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20A형, 28A형의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A53블록

- **36A/A-1형, 36B/B-1/B-2/B-3형 및 44A/A-1/A-2/A-3형** 세대에는 전기쿡탑 3구형(하이라이트형), 냉장고장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36A/A-1형, 36B/B-1/B-2/B-3형, 44A/A-1/A-2/A-3형의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44A/A-1/A-2/A-3형은 계약 시 동호는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되며 동호에 따라 발코니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 A54블록

- **44형** 세대에는 전기쿡탑 3구, 드레스룸이 설치됩니다. (가스쿡탑 등 가스 활용 기구 사용 불가)
- **44Aa/Ab형은 계약 시 동호는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되며 동호에 따라 발코니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 여부는 공급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개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7.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table><tr><th>세대구성원</th><th>비고</th></tr><tr><td>• 신청자</td><td rowspan="2">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tr><tr><td>• 신청자의 배우자</td></tr><tr><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tr><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r><tr><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table>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table><tr><td>외국인 배우자</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tr><tr><td>외국인 직계존·비속</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tr><tr><td>태아</td><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td></tr></table>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 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통합공임,국민↔국민 영구↔영구행복↔행복)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㉞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㉞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㉞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㉞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 를 기준으로 하며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 표 참조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화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원 이하	140%	5,397,246원 이하	150%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8,215,505원 이하	15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11,440,460원 이하	15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12,867,132원 이하	15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14,599,629원 이하	15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 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 가액 합산기준이 10,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 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자격조건을 충족한 자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인 사람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인 사람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 **화성동탄2 C26블록 31A형, 44A/B형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산업단지형 일반공급순위(공고문 3-6. 산업단지근로자 계층 참조)가 적용됩니다.**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 ①입주자격완화 순위 → ②일반공급 순위 → ③추첨**

-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㉔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④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①-㉔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5.05.09~2006.05.08**)
- ①-④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 표 참조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원 이하	140%	5,397,246원 이하	150%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8,215,505원 이하	15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11,440,460원 이하	15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12,867,132원 이하	15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14,599,629원 이하	150%
세대원(본인)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원 이하	140%	5,397,246원 이하	15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구분(신청자 기준)	해당세대	비 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신청자	-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자격조건을 충족한자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 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 요건 완화자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화성동탄2 C26블록 31A형, 44A/B형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산업단지형 일반공급순위(공고문 3-6. 산업단지근로자 계층 참조)가 적용됩니다.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①입주자격완화 순위 → ②일반공급 순위 → ③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①-④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①-⑥와 ②~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 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①-㉓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①-④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⑥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②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 표 참조

구분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8,215,505원 이하	15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11,440,460원 이하	15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12,867,132원 이하	15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14,599,629원 이하	150%
맞벌이 신혼부부	2인	7,120,104원 이하	130%	7,667,804원 이하	140%	8,215,505원 이하	150%
	3인	9,152,368원 이하	120%	9,915,065원 이하	130%	11,440,460원 이하	150%
	4인	10,293,706원 이하	120%	11,151,514원 이하	130%	12,867,132원 이하	150%
	5인	10,837,258원 이하	120%	11,740,362원 이하	13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11,679,703원 이하	120%	12,653,012원 이하	130%	14,599,629원 이하	15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 맞벌이 842,446원(2순위 912,649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일 것
-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

구분(신청자 기준)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반드시 공고문 [8 유의사항의 '기타사항' 확인])**
-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자격조건을 충족한자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화성동탄2 C26블록 31A형, 44A/B형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산업단지형 일반공급순위(공고문 3-6. 산업단지근로자 계층 참조)가 적용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고령자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1960.05.08. 이전 출생일)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 표 참조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원 이하	140%	5,397,246원 이하	150%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8,215,505원 이하	15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11,440,460원 이하	15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12,867,132원 이하	15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14,599,629원 이하	15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 합산기준 33,7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순위

■ 입주자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자격조건을 충족한자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자격완화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화성동탄2 C26블록 31A형, 44A/B형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산업단지형 일반공급순위(공고문 3-6. 산업단지근로자 계층 참조)가 적용됩니다.

3-5.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타 계층과 경쟁 시 주거급여수급자의 자격완화 순위 및 일반공급 순위는 모두 1순위로 산정

※ 화성동탄2 C26블록 31A형, 44A/B형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산업단지형 일반공급순위(공고문 3-6. 산업단지근로자 계층 참조)가 적용됩니다.

3-6. 산업단지근로자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 화성동탄2 C26블록만 해당 (타 단지는 해당되지 않음)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교육·연구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 중인 것
- * 입주 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 표 참조

구분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일반 산업근로자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원 이하	140%	5,397,246원 이하	150%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8,215,505원 이하	15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11,440,460원 이하	15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12,867,132원 이하	15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14,599,629원 이하	150%
맞벌이 산업근로자	2인	7,120,104원 이하	130%	7,667,804원 이하	140%	8,215,505원 이하	150%
	3인	9,152,368원 이하	120%	9,915,065원 이하	130%	11,440,460원 이하	150%
	4인	10,293,706원 이하	120%	11,151,514원 이하	130%	12,867,132원 이하	150%
	5인	10,837,258원 이하	120%	11,740,362원 이하	13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11,679,703원 이하	120%	12,653,012원 이하	130%	14,599,629원 이하	150%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
맞벌이 842,446원(2순위 912,649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산업단지근로자’의 계층의 해당 세대**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자격조건을 충족한 자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이고,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에 소재한 산업단지 근로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에 소재한 산업단지 근로자산업단지 근로자
3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공급대상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 **취업 합산 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취업기간을 합산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의 직장가입자 기간으로 확인함.

단, 대학 재학(휴학포함)기간 중 근무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청약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인터넷 청약신청 (PC/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5. 19(월) 10:00 ~ 5. 21(수) 16:00 ※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 대행 접수] 05.21(수) 10:00~16:00 ※ LH 화성동부권 주거복지지사	5.27(화) 16:00 이후 (확인 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명단”	5. 28(수) ~ 6.4(수)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 발송주소) (우)18454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층 LH 화성동부권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앞 * <u>기한 내 우체국소인</u> 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함	8. 27(수) 16: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또는 ARS(1661-7700)	당첨자 발표 후 예비입주자순위에 의거하여 개별 통보 ※ 금회 공고 당첨자 발표 후 첫 계약은 10월 예정 (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대행 접수 5월 21일만 가능합니다.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만 가능)**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제출기간 내 해당서류[공고문 5. 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서류를 등기우편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당첨자발표 등 추후일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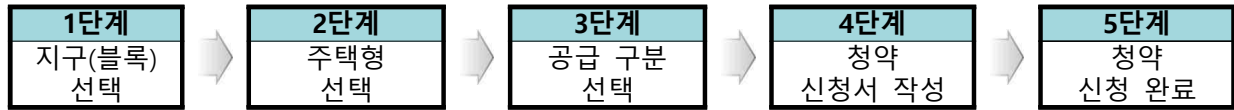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 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접수 방법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가능)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앱스토어(아이폰),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에서 앱 다운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 자격, 소득 등 입력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기타사항

-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5.05.19(월) 10:00시부터 25.05.21(수) 16: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5.05.19(월) 10:00시부터 25.05.21(수) 16: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 접수 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대행 접수 방법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하여 현장 대행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5.05.21.(수) (10:00~16:00)** [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
 - 신청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층 (LH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 접수현장에서 청약신청에 따른 **상담은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하실 단지와 형별을 정해서 오셔야 하며, 신청자격 요건 등도 반드시 숙지**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대행 접수 시 구비서류**(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와 **신청서류[공고문 5.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
 - * 청약접수 시 서류를 확인 후 다시 돌려드립니다. 따라서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후 서류제출 기간 내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 대행 접수 시 구비서류**(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위임장 : 불임3**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가 대리 신청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5.05.27(화) 16:00**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 LH청약플러스→『청약』클릭 →『청약결과확인』클릭 →『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청약』→『청약결과확인』클릭 →『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는 16:00 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공고문 5. 신청서류] 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제출**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층
 LH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우편번호:18454)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전화 확인이 어려우니 직접 우체국 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5.06.04]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05.0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학생" 및 "청년"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
- ※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8)**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자동 탈락 처리되므로 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를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바랍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 호수의 통상 약 1.5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순위에 따라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서류

- 인터넷(PC·모바일), 현장 대행 접수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 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전 원 필 수 제 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1]	• 작성 대상자 :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1]	• 동의 방법 :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붙임1]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 : 작성 제외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붙임2]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1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행정복지센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거소) 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해 당 자 제 출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행정복지센터]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1통
	임신진단서 [의료기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통

■ 공급대상자별(계층별) 추가 서류

공급대상		구비서류	발급처
대 학 생 계 층	대학생	①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붙임4]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②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해당 대학 [붙임4] 행정복지센터
	취업준비생	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②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해당 학교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①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②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청 년 계 층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 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③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저축가입은행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 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③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① 퇴직 후 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②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④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제출)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②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④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제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청 년 계 층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 제출 (미제출 시 입주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해당 직장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직장(세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완화요건 7년)이 경과한 사람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 가 필요한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 (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2) 병역의무이행 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복무 중인 경우) 또는 병적증명서 (복무 완료인 경우)	해당 학교
신 혼 부 부 계 층	신혼부부	①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②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 제출 (미제출 시 입주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①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붙임5] ②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붙임5] ③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④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도 발급 가능) ⑤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 제출 (미제출 시 입주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 입주 시점에 혼인 후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추가 제출 (미제출 시 입주 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붙임5] [붙임5]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신청자 본인의 아래 서류 제출 •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배우자의 아래 서류 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 <u>전체이력</u> ’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직 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직장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직장(세무서)
고령자		※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없음	
주거급여수급자		①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 근로자 (일반공급)		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③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1년 이상 근무(예정) 기간 소명 자료 추가제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직장

산업단지 근로자 (일반공급)	④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미제출 시 입주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수에 따른 거주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재청약자	• 병역의무이행 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u>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u> ① 병적증명서 ②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6. 당첨 예비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예비자 당첨발표 : 2025. 08. 27(수) 16: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자 명단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임대주택(통합공임·국민·영구·행복)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는 기존입주자 퇴거 등으로 향후 공가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계약 및 입주 까지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결정됩니다.**
- 계약시기 안내는 **예비순번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체결 2~3주 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순번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자에 대한 **계약 안내는 문자메시지(SMS)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시 LH청약플러스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변경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우리공사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계약자가 동·호를 선택할 수 없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계약 차례가 도달한 시기에 계약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 대기순서를 현재 예비입주자들 중 가장 뒤로 미루는 **후순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호 추첨이 끝난 후에는 후순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동호 추첨 전 후순위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 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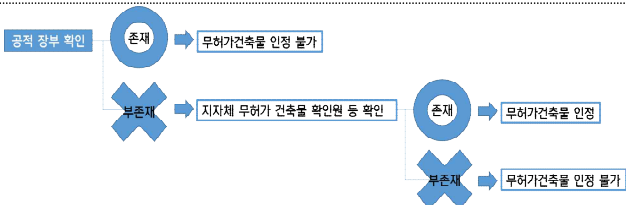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참고) 무허가건물 소명 방법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 (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내역
		자활 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 산	일 반 자 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 타 자 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상가 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 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 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td>10년</td></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 <tr> <td>산업단지근로자</td><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tr> </tbody> </table>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 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산업단지근로자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산업단지근로자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고등학교) 졸업(종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 :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추가 갱신계약을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기준에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 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이 주택의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계약 및 중복입주 금지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입주자로 선정된 분)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을 소유하거나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또는 리츠)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 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 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입주안내	-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사집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 내 입주하는 경우 입주(열쇠 내줌)일을 기준으로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단,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한 경우에는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금회 모집공고를 통해 당첨되는 예비자의 입주예정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계약 당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 혼인관계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미제출시 계약이 무효처리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차량 등록이 원칙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세대별 차량등록 대수를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5년의 경우 3,803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사항 등에 따른 단지별 주차 가능 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data-bbox="328 1639 1426 2013"> <tr> <th>단지명</th><th>건설호수</th><th>주차 가능 대수</th><th>비고</th></tr> <tr> <td>C26블록</td><td>608</td><td>308</td><td></td></tr> <tr> <td>A82블록</td><td>820</td><td>501</td><td></td></tr> <tr> <td>A77-1블록</td><td>900</td><td>598</td><td></td></tr> <tr> <td>A4-1블록</td><td>1,640</td><td>1,272</td><td></td></tr> <tr> <td>지원6-2블록</td><td>280</td><td>150</td><td></td></tr> <tr> <td>A53블록</td><td>700</td><td>513</td><td></td></tr> <tr> <td>A54블록</td><td>1,350</td><td>887</td><td></td></tr> </table>	단지명	건설호수	주차 가능 대수	비고	C26블록	608	308		A82블록	820	501		A77-1블록	900	598		A4-1블록	1,640	1,272		지원6-2블록	280	150		A53블록	700	513		A54블록	1,350	887	
단지명	건설호수	주차 가능 대수	비고																														
C26블록	608	308																															
A82블록	820	501																															
A77-1블록	900	598																															
A4-1블록	1,640	1,272																															
지원6-2블록	280	150																															
A53블록	700	513																															
A54블록	1,350	887																															

지구 및 단지특성	• 지구 및 단지 특성은 이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되었을 수 있음) [이전 공고문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공고문] - 2016.06.28. C26블록 입주자 모집 참조 - 2018.08.30. A82블록 입주자 모집 참조 - 2019.06.27. A77-1블록 입주자 모집 참조 - 2019.09.26. A4-1블록 입주자 모집 참조 - 2021.03.31. 지원6-2블록 입주자 모집 참조 - 2022.06.30. A53블록 입주자 모집 참조 - 2022.10.28. A54블록 입주자 모집 참조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임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 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9.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 ~ 900룩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룩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금회 공급 주택은 재임대주택이므로 장애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08.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